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 710 호 2009. 8. 7 (금)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1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4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16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8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1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당하동란과 원당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당 하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하동 일원 - 원당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원당동 562, 778 - 원당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당하동 3-2, 3-3, 4-1, 5-3, 6-1, 7-1, 7-2, 8, 8-2, 8-3, 9, 10-1, 10-2, 13-2, 14-1, 22-1, 22-3, 22-4, 22-5, 22-8, 22-11, 22-14, 22-18, 22-20, 22-23, 22-24, 23-1, 23-3, 24, 26, 26-2, 27, 31, 32-1, 32-2, 32-3, 35, 36, 36-1, 36-4, 981-1, 982, 983, 산109, 산110, 산110-2, 산110-3, 산110-4, 산111-1, 산112, 산112-2, 산112-3, 산112-4, 산112-5, 산113-4, 산116-2
원 당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당동 일원 - 당하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당하동 3-2, 3-3, 4-1, 5-3, 6-1, 7-1, 7-2, 8, 8-2, 8-3, 9, 10-1, 10-2, 13-2, 14-1, 22-1, 22-3, 22-4, 22-5, 22-8, 22-11, 22-14, 22-18, 22-20, 22-23, 22-24, 23-1, 23-3, 24, 26, 26-2, 27, 31, 32-1, 32-2, 32-3, 35, 36, 36-1, 36-4, 981-1, 982, 983, 산109, 산110, 산110-2, 산110-3, 산110-4, 산111-1, 산112, 산112-2, 산112-3, 산112-4, 산112-5, 산113-4, 산116-2 -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원당동 562, 77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8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3. 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및 기관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그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구청장은 적합한 친환경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 할 수 있다.

제9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 확산) ①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업 등의 기관에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관·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8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16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 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 내용	기관· 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	(택일)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주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귀하